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이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세서'란 것이다.

명세서는 자신의 발명을 사회에 알리는 기술공개 문서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특허권이 발생했을 때 타인이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경계를 정하는 법률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기술공개적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면 특허란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발명을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특허 출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발명을 최대한 감추고 발명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만큼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복잡해지면서 완성된 발명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특허품 이면에 숨어있는 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은 기술공개 부분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 부르고, 이 부분에는 다른 기술자가 그 설명을 보고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설명 특허를 받아도 나중에 무효로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권리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다양한 예들을 자

세하게 제시할수록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데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돼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명세서에서 권리의 경계를 정한 부분을 특허청구 범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청구항들을 기재할 수 있다.

하나의 청구항은 하나의 권리가 되므로,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범위의권리를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 청구항에 권리로 포섭하기 위한 내용들

을 모두 기재하면 그만큼 권리가 넓어진다

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기껏 출원해서 얻은 특허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오해다.

특허권의 범위를 해석하는 가장 우선되는 원칙은 청구항의 구성요소 전부를 일체로 본다는 것이다.

즉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중 어느 하나라도 타인이 실시하지 않으면 그타인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구성요소를 적게 기재할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효과와는 반대다.

그러나 청구항에 구성요소를 최소한으로 기재하면,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 영역과 중첩돼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자유기술 영역과 특허기술 영역 사이의 경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범위가 좌우된다.

출처 매일경제

특허 권리 범위 넓어져

우리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은 곧 21세기 신자유주의 하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다. "지식"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사실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과학기술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게 특허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5위의 특허출원국이란 사실은 과학기술 경쟁력강화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다. 특허법 등 관련 제도 역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경제운영 성과, 정부 효율성, 인프라스 트럭처 및 기업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을 종합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조사대상 49개국 중 27위로 평가했지만, 인프라스 트럭처 부문에 포함된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0위와 19위로 분석했다. \IMD가 국가경쟁력에 관한 4개 평가 부문 중 과학 경쟁력을 10위로 평가한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그러나 과학 경쟁력 평가항목(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과학적 환경, 지적재산권) 중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49개국 중 30위로 평가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이고, 특허권보호 정도가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특허제도 운영이 그만큼 낙후돼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중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특허중시 정책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국가이다. 지난 1983년 6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실업대책 마련 등을 위해 존 영 홀렛 패커드 사장을 위원장으로 실업계, 노동계, 정부관료 및 학계 등 30명으

로 구성된 산업경쟁력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18개월 간의 활동 끝에 10개의 연구개발 중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 모두 32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특허중시 정책을 강조한 이 보고서는 연방순회합소법원(CAFC) 설치와 함께 미국의 90년대 경제 호황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특허중시 정책은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법체계 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이 없

특허 정책 발상을 바꾸자

지만 특허 보호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특허권 획득과 관련된 특허청,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법부가 특허중시적 시책을 펴야 한다. 우선 특허청은 특허권 부여절차를 신속히 하고 특허권 내용에 대한 확실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허청 예산은 대부분 국가기관과 달리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관리, 집행돼 산업재산권 출원의 지속적증가로 흑자재정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사관은 공무원 정원에 묶여 특허출원 증가에 비례한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별회계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는 특허청 심사관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특허청의 고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에 비

례해 증원을 허용해 신속한 특허심사기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심사 소요기간이 현재 평균 21개월이 넘고, 앞으로 더 길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13개월, 일본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해 18개월 이내로 특허권 부여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법원 설립 이래 특허심판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특허중시 정책 차원에서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마땅하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설립 이전부터 기술판사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구제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특허법원의 특허침해구제소송 관할집중은 특허법원이 직접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사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다.

특허법원의 특허침해구제소송 관할집중은 미국의 연방순회합소법원 처립특허권 행사에 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하는 효율적 제도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과학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특허중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시행을 주저해선 안된다.

현재 특허법원은 3개 합의재판부를 두고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년쯤 남은 특허법원 신청사 준공 때는 적어도 10개 합의재판부 정도를 구성, 특허침해구제소송까지 관할해 특허법원 본연의임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줄져 내외경제